

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1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행정안전부의 「지방공무원 여비 조례(표준안)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시출장 공무원을 확대 규정하고 여비 부정수령액 환수 시 가산 징수의 정도를 상향하여 여비 지급의 합리성 도모 및 청렴도 제고

2. 주요내용

- 가. 여비 조례 표준안에 따른 상시출장 공무원 관련 조문 정비(안 제2제2항)
- 나. 상시출장 월액여비 지급 대상 범위 신설(안 제2조제2항, 별표 1)
- 다. 여비 부정수령액 환수 시 수령액 외 가산금 징수의 정도 상향
 - (현행) 부정수령액의 2배 → (개정) 부정수령액의 5배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제29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 여비 조례”를 “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-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,
월 지급한도액은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따로 정한다.

제4조 중 “별표 1”을 “별표 2”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배를 가산금으로”를 “5배를 가산하여”로 한다.

종전의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,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) 2021년 12월 9일 전
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
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구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

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5호 중 “구미시 여비조례”를 “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”로 한다.

② 구미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본문 중 “구미시여비조례”를 “「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”로 한다.

제4조 (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「구미시 여비 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「구미시 여비 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[별표 1] <신 설>

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

(제2조제2항 관련)

구분	지급 대상	지급방법
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	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(내근 직원 제외)	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
	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	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, 월 15일
	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	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
	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, 농업인 상담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(내근 직원 제외)	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
	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	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
	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	하되,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
	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	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
	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	한 일수는 제외한다.
	공식적인 회의나 행사에 사진, 영상 등 촬영을 담당하는 공무원	

※ 지급 대상 :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,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(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)

※ 지급액 :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,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, 업무의 특성,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구미시 여비 조례</u>	<u>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</u>
제2조(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)	제2조(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,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.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.	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, 월 지급한도액은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따로 정한다.
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, 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따로 정한다.	<u><삭 제></u>
제4조(운임 및 숙박비 지급)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<u>별표 1</u>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	제4조(운임 및 숙박비 지급) ----- ----- ----- <u>별표 2</u> ----- -----.

제5조(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)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고, 부정수령액의 <u>2배를 가산금으로</u> 징수한다. 1. · 2. (생략)	제5조(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) ----- ----- ----- ----- <u>5배를 가산하여</u>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
--	---

관계법령

□ 「지방공무원법」

제46조(실비보상 등)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.

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.<신설 2012.12.11., 2021.6.8.>

□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

제29조(여비 지급의 특례) ①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이 영에 따른 여비의 지급액, 지급 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>

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 따라 지급하되, 그 지급액 및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>

제29조의2(지자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특례) 이 영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.

소 관 부 서		총 무 과
입 안 자	과 장	박 주 영
	담 당	강 유 현
	담 당 자	홍 다 영 (480-6775)